



#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

이승준 연구위원

- **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소프트랜딩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.**
  -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 만들어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17년부터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.
  -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에는 일부 평가지표를 변경하고, 임계치 및 기준점수 설정방식과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을 바꾸었으며, 1등급과 3등급의 상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음.
  
- **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차등평가모형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함께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.**
  - 차등평가모형 도입 당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평가모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.
  - 특히, 보험권역의 경우 회계제도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지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차등평가모형 변경도 이러한 제도 및 규제 변화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음.
  
- **평가지표의 변경과 임계치의 설정에 있어 보험권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고 차등평가모형 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**
  - 평가지표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생명보험의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.
  - 전반적으로 차등평가모형 제도변경 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## 1. 검토배경



-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소프트랜딩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.
  -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의 차등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음.
  -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규제환경 변화와 모형 구축 이후의 재무실적을 반영하여 모형을 적시성 있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.
-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 만들어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시행<sup>1)</sup>되었으며, 2017년부터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(〈표 1〉 참조).
  - 2012년 구축된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금융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음.

〈표 1〉 등급별 적용 요율(업권별 표준보험요율 대비)

등급	소프트랜딩 기간		본격 가동 기간		
	2014~2015	2016	2017~2018	2019~2020	2021~
1등급(할인)	△5%	△5%	△5%	△7%	△10%
2등급(표준 <sup>주)</sup> )	0%	0%	0%	0%	0%
3등급(할증)	+1%	+2.5%	+5%	+7%	+10%

주: 은행 0.08%, 보험·금투 0.15%, 저축은행 0.40%.  
 자료: 예금보험공사(2016. 9), 「차등평가모형 개선(안)」.

- 201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모형은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및 보험료 수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(KDI)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히고 있음.
  - 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를 변경하고, 임계치 및 기준점수 설정방식과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을 변경하며, 1등급과 3등급의 상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음.

1) 이승준(2012. 1. 2), 「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 시행(안)과 개선방향」, 『KiRi Weekly』, 제163호.

■ 본고는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- 예금보험 요율의 차등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유도라는 차등요율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적함.
- 보험권역의 경우 재무건전성 강화와 IFRS4 2단계 도입의 영향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후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야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평가지표의 변경이나 임계치의 상향이 보험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평가모형 변경 과정의 투명성 결여 문제도 지적함.

## 2.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 주요 내용



### 가. 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도록 평가지표 변경

-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현행 모형의 평가지표인 유동성비율과 매출이익률을 유동성리스크비율과 사업비율로 각각 변경하였음(〈표 2〉 참조).
- 기존 보완평가부문 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중 사업비율을 기본평가부문 평가지표로 이동시키고 이를 영업이익률로 대체함.

〈표 2〉 평가지표 변경

현행	변경안	변경사유
유동성비율	유동성리스크비율	최근 재무실적을 반영하여 모형 검증 후 유의성이 높은 지표로 대체
부실자산비율	금리리스크비율/자본대비보험위험액	
매출이익률	사업비율	

주: 금리리스크비율은 생명보험, 자본대비보험위험액은 손해보험에 각각 사용되는 평가지표임.  
 자료: 예금보험공사(2016. 9), 「차등평가모형 개선(안)」.

- 현행 모형의 평가지표인 부실자산비율 대신 생명보험은 금리리스크비율로, 손해보험은 자본대비보험위험액으로 각각 지표를 변경하였음.

## 나. 임계치 설정방식 변경과 최대 임계치 상향 설정

- 평가지표별로 만점과 0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최대임계치와 최소임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상위 그룹과 하위그룹 금융회사의 실적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(〈표 3〉 참조).
-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부보회사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임계치를 설정하고 평가지표의 부실 변별력 및 등급 판정 변별력을 제고하였다고 밝힘.
-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최대임계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, 지급여력비율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높아짐.

〈표 3〉 임계치와 기준점수 설정방식 변경

구분	현행	변경안
임계치	<p>평가지표별로 전체 실적치 중 〈리스크와 부의 상관관계인 지표〉 70 percentile 값 → 최대임계치(만점) 20 percentile 값 → 최소임계치(0점)</p> <p>〈리스크와 정의 상관관계인 지표〉 30 percentile 값 → 최소임계치(만점) 80 percentile 값 → 최대임계치(0점)</p>	<p>〈리스크와 부의 상관관계인 지표〉 상위그룹회사 실적치 상위 30% 값 → 최대임계치(만점) 하위그룹회사 실적치 하위 25% 값 → 최소임계치(0점)</p> <p>〈리스크와 정의 상관관계인 지표〉 상위그룹회사 실적치 상위 30% 값 → 최소임계치(0점) 하위그룹회사 실적치 하위 25% 값 → 최대임계치(만점)</p>
기준점수	1:2:3등급의 비율이 “3:4:3”이 되도록 설정	1·2등급 기준점수: 상위그룹회사의 평균 값 2·3등급 기준점수: 하위그룹회사의 최대 값

주: 상위 및 하위그룹회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 평가결과 및 실제 부실사례를 고려하여 구분함.  
자료: 예금보험공사(2016. 9), 「차등평가모형 개선(안)」.

## 다.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 변경

- 보완평가부문에서 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리는 대신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재무위험관리능력평가의 기본점수 5점을 폐지함(〈표 4〉 참조).
- 재무위험관리능력은 영업이익률과 부실자산비율이 각각 7.5점씩,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은 금융당국 제재현황 등과 예금자보험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이 각각 2점과 3점을 차지함.

〈표 4〉 보완평가부문 평가방식 변경

구분	현행	변경안
배점 조정	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: 10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: 10점	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: 15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: 5점
평가방법 변경	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시 10점 중 5점을 기본점수로 부여	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시 기본점수 부여방식 폐지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변경

자료: 예금보험공사(2016. 9), 「차등평가모형 개선(안)」.

-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평가와 이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평가부문의 평가방식도 변경하였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히고 있음.

### 라. 1등급 및 3등급 상한비율 설정으로 상대평가로 전환

- 새로운 예금보험 평가모형에서는 1등급과 3등급의 비율을 40%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함.
- 기존 평가모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3등급만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부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음.

〈표 5〉 1등급 및 3등급 상한비율 설정

현행	변경안
3등급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	1·3등급이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

자료: 예금보험공사(2016. 9), 「차등평가모형 개선(안)」.

## 3.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



-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차등평가모형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함께 특히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.

- 차등평가모형 도입 당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평가모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.
- 보험권역의 경우 회계제도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지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차등평가모형 변경도 이러한 제도 및 규제 변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.
  - 향후 IFRS4 2단계의 시행과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로 지급여력비율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 평가모형의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.

■ 또한 주요 평가지표의 변경과 임계치의 설정에 있어 보험권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며, 변경 과정에서 소통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.

- 평가지표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생명보험의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.
- 전반적으로 차등평가모형 제도변경 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### 가. 상대평가 전환에 따른 제도의 취지 및 일관성 훼손

■ 차등요율제도 도입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1등급 금융회사의 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.

- 절대평가는 건전경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회사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어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함.
- 미국과 캐나다 등 차등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한 주요국에서도 절대평가를 통해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특히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경우 등급편중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함.

■ 변경안에 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상한을 40%로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려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.

- 또한 3등급을 받는 금융회사도 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다른 회사의 리스크관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높더라도 할증을 안 받는 경우도 가능함.

-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비례한 차등적 보험료 부과를 통하여 부보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수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주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차등요율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.

#### 나. 보험권역 제도변화로 인한 차등요율제도 안정성 저해

- 보험권역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같은 지급여력비율 등 차등평가모형 평가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제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음.
  -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되어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<sup>2)</sup>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실질적 건전성 하락보다는 제도변화에 기인함.
- 이처럼 보험산업 전반에 예정된 각종 제도변화로 인해 차등모형 평가지표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둘러서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.
  -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후에 평가모형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차등요율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함.

#### 다. 평가지표 변경 및 임계치 상황에 대한 문제점

- 평가지표의 변경 중 매출이익률 대신 사업비율을 손실회복능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사업비율과 손실회복능력 사이의 연관성은 의문시됨.
  - 일반적으로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영전략과 손실회복능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의문임.
    - 예를 들어, 보장성보험 위주의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 보험회사의 손실회복능력이 특별히 낮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.

2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4. 7. 31), 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”.

- 생명보험에서 건전성 관리능력의 평가지표로 부실자산비율 대신 금리리스크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은 평가지표에서 금리리스크에 따른 위험을 중복적으로 계상할 우려가 있음.
  -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급여력비율 및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을 낮추므로 이미 다른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.
- 상대평가의 도입 및 임계치의 상향조정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및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.
  - 특히, 지급여력비율 또는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비율을 넘는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이상이 없으므로 이들 평가지표 최대임계치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.

## 라. 차등모형 변경 과정의 문제점

- 금번 차등평가모형 변경은 보험권역 전문가 등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져 제도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.
  - 향후 보험권역 차등보험요율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권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모형의 변경 등에 있어서 보험권역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. **kiri**